

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

---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7.25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**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.27.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·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**거리두기 3단계**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응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
  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,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,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,
    -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\*: 2021. 7. 27.(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

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2468(2021.7.18. 사적모임 제한)에 의한 조치는 2021.7.27.부터 본 조치로 대체하고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2909(2021.7.21. 공연장 추가조치)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3268(2021.7.23.)에 의한 **공연장 관련 조치**는 당초대로 2021.8.1.까지 적용

나. 적용지역: 14개 시·도\*\*

\*\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#### 다. 적용단계: 거리두기 3단계

- 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- 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#### 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##### ○ 대상시설(35종)

- **1그룹(3종)**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
- **2그룹(5종)**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통보관
- **3그룹(12종)**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**기타시설(13종)**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종교시설
- **고위험 사업장(2종)**: 콜센터, 물류센터

##### 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##### 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#### 2) 모임·행사

##### 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##### 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- (3단계) 사적 모임 5명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·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
<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'추가적용 수칙' 적용

- (시험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\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: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# 3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### 4) 국공립시설

-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- \*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  
\*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·경마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### 5) 사회복지시설

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### 6) 학교(등교)

- 3단계: 밀집도 1/3 ~ 2/3(고등학교는 2/3) 이내 준수

### 7)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-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
4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-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  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3.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#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4개 시도지사

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박정명	생활방역팀장	심은혜	사회전략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	권덕철		
				2021. 7. 26.			
				부 본부장		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 
중앙사고수습본부-23350 접수 학생건강정책과-6385 (2021. 7. 26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[mk7069@korea.kr](mailto:mk7069@korea.kr) / 비공개(5)